

울진군 공고 제2026 - 34호

2026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(1차)

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01월 08일

울진군수

1. 사업개요

가. 사업비 : 100백만원(군비)

나. 사업기간 : 2026. 1. ~ 12.

다. 지원금액

구 분	지 원 금 액	비 고
가정용 감량기	최대 40만원	
사업용 감량기	최대 70만원	구매금액의 50% 범위 내

라. 추진배경 :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활성화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 도모

마. 관련근거 : 『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』

2. 추진계획

가. 1차 신청기간 : 2026. 1. 8.(목) ~ 2026. 1. 30.(금)

※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

나. 신청방법 :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(우편·메일 접수 가능)

※ 우편, 메일 접수 시 해당 읍면사무소 사전 문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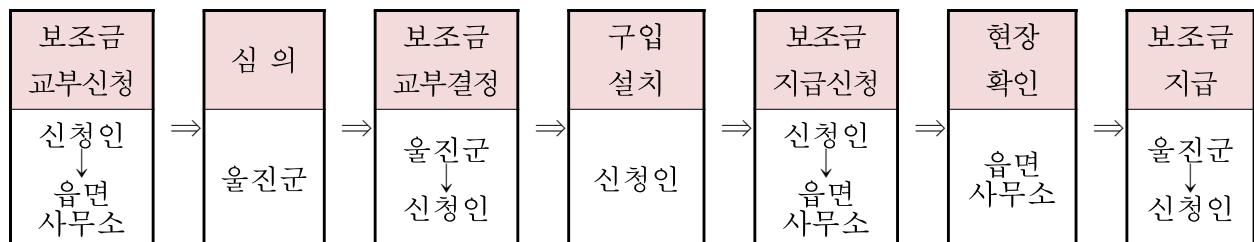
다. 지원대상

- 1) 가정용: 공고일 기준 울진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 또는 구성원(1가구 당 1대 지원 원칙)
 - ※ 세대 분리의 경우에도 동일 주소지인 경우 1대만 지원
 - 2) 사업용: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가 울진군에 위치하고 관련 인허가 (영업신고 등)를 받아 운영 중인 사업주 (1사업장 당 1대 지원 원칙)
 - ※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외

라. 지원대상 감량기기

- 1) 처리방식
 - 가열·건조,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·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식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감량화하는 기기로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
※ 『하수도법』 제33조 및 『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』 제5조에 따라 인증제품이라도 단순 분쇄식 시설(주방용 오물분쇄기) 및 싱크대 부착방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 - 2) 처리기준
 - 가열에 의한 건조방법 : 부산물 수분함량 25% 미만
 -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부숙 등의 방법 : 부산물 수분함량 40% 미만
 - 3) 품질인증제품
 - 가열·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제품으로 **공인 기관 품질인증 1개 이상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**
※ 품질인증 : K마크(한국산업기술시험원), 환경표지(한국환경산업기술원), Q마크 등
※ 안전인증 : KC마크(전기용품 안전기준)

3. 세부추진 내용



- 가. 지원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·통보되면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전액 지불하여 우선적으로 감량기를 구매(설치)하여야 하고, 보조금 지급 요청서 등 관련 서류를 1달 이내에 제출하여야 보조금 지급
- ※ 대상자 통보 전 사전 구매(설치)한 감량기에 대한 보조금 지원 불가
- ※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 1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1개월 경과 시 사업 포기 의사로 간주
- 나. **지원 대상 감량기 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, 미충족 감량기 구매 시 보조금 지원 불가**
- 다. 지원 대상 조건에 맞는 감량기를 보조사업자가 직접 선택하여 구매하여야 하므로 **구매 전 업체에 지원 대상 가능 여부 확인 필요**
- 라. 유의사항
- 보조금 지원대상 감량기기인지 제품 구매 전 판매업체에 확인이 필요(감량기의 성능 및 처리방법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)
 - 보조금은 총 구매비의 50% 범위에서 신청 가능(가정용 최대 40만원, 사업용 최대 70만원)하며, 초과분은 자부담
 -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
 - 보조금을 지급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 불가
 - 허위,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이 체납된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
 - 업체와 결탁하여 가격을 부풀리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등 부당행위 적발 시 『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고 동일사업 재신청 불가
 - 감량처리기의 운영상 발생하는 유지관리비(A/S, 전기세, 통신비, 소모품)는 지원하지 않음. (구매 업체에 직접 사전문의)
 -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급 취소.
 -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·운영 가이드라인(2020. 3. 환경부)」에 따름

- 문의처 : 울진군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(☎054-789-6132)
관할 읍·면사무소

울진읍 (☎ 054-789-4013) 평해읍 (☎ 054-789-4113)
북면 (☎ 054-789-4213) 금강송면 (☎ 054-789-4313)
근남면 (☎ 054-789-4413) 매화면 (☎ 054-789-4523)
기성면 (☎ 054-789-4613) 온정면 (☎ 054-789-4731)
죽변면 (☎ 054-789-4813) 후포면 (☎ 054-789-4912)

마. 신청서류

1)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시

- ①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지원사업 신청서 1부 [서식 1]
- ② 사업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지원사업 신청서 1부 [서식 2]
- ③ 감량기 견적서 및 규격서 각 1부
- ④ 지방세(세외수입) 체납 여부 확인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[서식 3]
- ⑤ 사업계획서 [서식 4]

2)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[감량기기 구매 후]

- ① 음식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청구서 [서식 5]
- ② 사업완료보고 및 보조금 정산서 [서식 6]
- ③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[서식 7]
- ④ 통장사본(신청인 명의)

[서식 1]

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(가정용)
[2026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]

신 청 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	
	연락처 (핸드폰)		연락처 (메일/팩스)	
	주 소 (설치장소)	(우편번호 :)		
신청내용	사업명	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		
	사업내용	•감량기 설치대수 : 1대 •감량기 처리용량 : kg/일 •처리방식 : 가열에 의한 건조 / 발효 / 발효건조 / 퇴비화 / 사료화 / 부숙		
	감량기 구매금액	원	보조금	원
	자부담		원	
감 량 기	제품명 (제조사)		성적서 발급기관	
	모델명		발급번호 (발급일자)	

위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: (서명 또는 인)

울진군수 귀하

※ 구비서류

- 감량기 견적서 및 규격서 각 1부.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등 1부.
- 사업계획서 1부.

《유의사항》

- ① 보조금 신청액은 구입액의 50%, 최대 가정용 40만원, 사업용 70만원까지 지원함
- ② 사업대상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선정기준 및 예산범위에 따라 확정되며, 사업을 신청하였더라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[서식 2]

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(사업용) [2026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]				
신청인	성명/ 사업장명	사업자등록번호/ (법인)등록번호		
	주 소 (설치장소)	(우편번호 :)		
	대 표 자	성 명	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	사무실
		주 소		핸드폰
신청내용	사업 명	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		
	사업내용	•감량기 설치대수 : 1대 •감량기 처리용량 : kg/일 •처리방식 : 가열에 의한 건조 / 발효 / 발효건조 / 퇴비화 / 사료화 / 부숙		
	감량기 구매금액	원	보조금	원
	자부담		원	
감량기	제품명 (제조사)	성적서 발급기관		
	모델명	발급번호 (발급일자)		
위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.				
년 월 일				
신 청 자 : (서명 또는 인)				
울진군수 귀하				
* 구비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사본 각 1부. - 감량기 견적서 및 규격서 각 1부. 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등 1부. - 사업계획서 1부. <p>《유의사항》</p> <p>① 보조금 신청액은 구입액의 50%, 최대 가정용 40만원, 사업용 70만원까지 지원함</p> <p>② 사업대상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선정기준 및 예산범위에 따라 확정되며, 사업을 신청하였더라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.</p>				

[서식 3]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용,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및 제3자 위탁 · 제공 동의서

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및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22조 등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.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, 동의 여부를 체크,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1.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업무관련 정보 확인 동의[필수]

[이용기관 명칭] · 울진군청

[이용 목적] · (울진군)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 확인

[공동이용 행정정보] · 이용기관은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2.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[필수]

[수집 · 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] · 개인식별정보(성명, 연락처, 신상사항 등)

[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목적]

· (울진군)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 확인

[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 · 보조금 지급까지 활용,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3.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[필수]

[위탁·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] · 개인식별정보(성명, 연락처, 신상사항 등)

[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] · 울진군

[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]

· (울진군)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 확인

[개인정보를 위탁·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]

·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본인은 본 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용,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”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, 이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성 명 : (인)

[서식4]

사 업 계 획 서

【 개인(사업자)명 : _____ (대표 : _____)】

1. 사업 명(개요) :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

2.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

3. 보조사업 수행 계획 및 사용방법

감량기기 구매 및 설치 내역	상품명		제조사	
	판매점명		감량방식	
	설치장소			

4. 산출기초

(단위 : 원)

보조금 신청내역	구매금액			
	보조금 신청금액		자부담 금 액	
	입금계좌	은행명:	계좌번호:	예금주:

* 사업신청자와 예금주가 같아야 함

5.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: 해당없음

년 월 일

울진군수 귀하

[서식 5] 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[별지]

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청구서
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	성별
	주소 (연락처)			
세대주	성명		세대주와의 관계	
감량기기 구매 및 설치 내역	상품명		제조사	
	판매점명		감량방식	
	설치장소		설치일시	
보조금 신청내역	구매금액			
	보조금 신청금액		자부담 금액	
	입금계좌	은행명:	계좌번호:	예금주:

「울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」 제7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해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(서명)

울진군수 귀하

* 구비서류

- 사업완료보고 및 보조금 정산서 1부.
-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.
- 청렴이행 서약서

[서식 6]

사업완료보고 및 보조금 정산서

사업명 2026년도 음식물쓰레기처리기 설치 지원사업

□ 사업실적보고

계획	실행	증감	구매일	비고
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구입	1대 구입	-		

□ 보조금 정산서

(단위:원)

보조금 교부 결정액(A)			실집행액(B)			증감(A-B)		
계	보조금	자부담	계	보조금	자부담	계	보조금	자부담

□ 자부담 방법:

상기와 같이 『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』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.

2026년 월 일

보조사업자 주소 :

성명 :

(인,서명)

생년월일 :

울진군수 귀하

사업완료확인서(구매내역)

<u>현금영수증 또는</u> <u>카드매출전표 등 붙임</u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구매자 이름, 구매금액과 구매일자 표기(구매자 정보가 없을 경우 카드 복사본 추가제출)* 부가가치세법 제46조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로써 증빙 가능한 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* 간이영수증 불가	
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	결제 카드 (이름, 카드번호 표기)
제품번호 사진 ○ 제품 고유번호(S/N) :	제품 설치사진

[서식 7]

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

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울진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. 귀 울진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아울러,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울진군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.

< 벌칙 규정(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~제40조) >

○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(제37조~제40조)

- ▶ 제37조(벌칙)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▶ 제3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
 1. 제13조(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)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
 2. 제21조(재산 처분의 제한)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
- ▶ 제39조(벌칙) ① 제14조(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) 또는 제15조(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)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
 1. 제16조(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) 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
 2. 제16조(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) 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
 3. 제17조(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) 또는 제29조(검사)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
- ▶ 제40조(양벌 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·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년 월 일

신청자

성 명(사업장명)

(서명 또는 인)

울진군수 귀하